# 2014 년 임시헌법에 따른 헌법안을 제정한 과정

헌법기초제정위원회에게 헌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국가개혁위원회의 첫 본회의 열릴 시 국가개혁위원회가 60 일 내 의견 및 제의를 제출한다. ( 31 조 (2), 3 조항

헌법기초제정위원회 36 명 (32 조 1 조항)

국가개혁위원회의장 15 일 내 첫 회의 시 위임한다.

1.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의 제의에 따른 헌법기초제정위원회의장을 임명함
2. 국가개혁위원회의 20 명으로 제시함
3. 내각의 5 명으로 제시함
4. 입법의회의 5 명으로 제시함
5.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의 5 명으로 제시함

헌법기초제정위원회가 35 조에 따라서 10 개 주제의 헌법안을 제정한다. 국가개혁위원회, 입법의회, 내각, 국가평화질서위원회 , 국민 그리고 관련한 기관들이 심사를 참조하기 위하여 120 일 내 의견 및 제의를 제출함 (34 조 2 항)

120 일 이내에 신헌법 개정안을 완료하지 못하면 헌법기초제정위원회의 의원 자격이 먼료됨.

새 헌법기초제정위원회가 전 헌법기초제정위원회의 만기 날짜로부터 15 일 내에 임명되어야 함.

헌법기초제정위원회 헌법안을 마무리 제정함

헌법 개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각들 및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함.

국가개혁위원회에게 헌법안을 제출함

국가개혁위원회의 본회의에서 헌법안을 10 일 내 심사함 (36 조 1 조항)

국가개혁위원회의 의원들은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주거나 건의를 제시하기에 완료하였을 때부터 30 일 내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제시할 수 있음. 이는 국가개혁위원회 총 의원들이 적어도 10 분의 1 미만의 의원으로 구성됨.

헌법기초제정위원회의장 (36 조 4 조항)

국가개혁위원회의원의 개정을 원한 경우 헌법기초제정위원회에게 60 일 내 심의하기 위한 제출할 수 있고 헌법기초제정위원회 적절히 결점을 고칠 수 있음 (37 조 1 항)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기초제정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받았을 경우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본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결 혹은 부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에 대해 국가개혁위원회가 벌써 결정을 받는 헌법 초안을 다시 수정하지 못함. 그렇지만 헌법 초안에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고 헌법기초제정위원회가 그 헌법 초안에 대하여 가결로 결정해서 그 헌법 초안을 수정하기에 찬성하거나 또는 헌법기초제정위원회가 완성해진 헌법 초안을 위하여 그 헌법 초안을 수장하기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완성된 헌법 초안을 다시 수정하면 됨.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기초제정위원회 의원의 자격이 만료됨.

부결의 경우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의 자격이 만료됨.

가결의 경우

국가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가결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부터 30 일 내에 그 헌법 초안을 국왕의 제가를 받기 위해 상신함.

왕께서 헌법 초안에 서명하셨음.

관보에 공포함.

헌법의 시행.

국왕께서 헌법 초안에 승인을 거부해서 국가개혁위원회에 돌려주는 경우.

90 일 내에 헌법 초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헌법 초안이 소멸된 경우

헌법기초제정위원회 의원의 자격 만료.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의 자격 만료.

새 국가개혁위원회 및 새 헌법기초제정위원회가 설치됨.